

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.  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 지급이 정액제에서 실비 정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여비 지급구분을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 제1호나목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.
- 나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조정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8조의2, 제17조, 제18조 및 제29조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생략(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)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별표1특호라목”을 “별표 1 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,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본다.
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”은 “「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」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
5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29조제1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와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,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</p> 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특호라목을 적용한다. ② (생략)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</li> <li>2. 제17조제1항 단서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li> <li>3. 제18조제1항 단서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”로 “동규정 [별표1]”은 “동규칙 [별표1]”로 본다.</li> <li>4. 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</li> <li>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6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제2항</li> </ol>	<p>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</p> 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----- -----별표 1 제1호나목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,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본다.</li> <li>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</li> <li>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li> <li>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”은 “「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」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[별표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계약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</p>	<p>5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</p> <p>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제29조제1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와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8.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”으로,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</p>

관 계 법 령

[공무원여비규정]

제8조의2(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4조제5항의 정부 구매카드(이하 "정부구매카드"라 한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~④ (생략)

제17조(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)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(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)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,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,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8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 (생략)

제29조(여비지급의 특례)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·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,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.

③대통령특사(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)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